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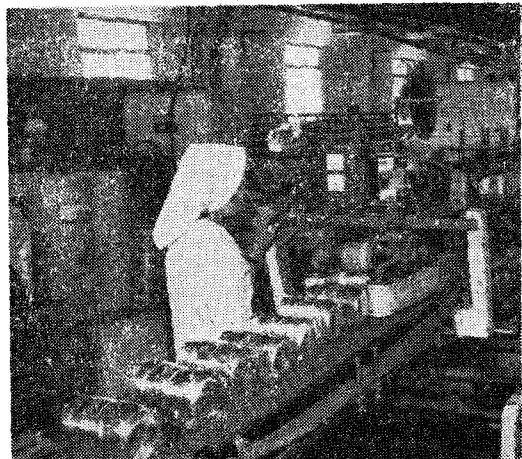
食品衛生의 重要性

① 食品衛生業者의 責務

1946年 世界의 55個國에 의하여 組織된 世界保健機構(W.H.O)는 그 憲章에서 「保健이라 함은 肉體的·精神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完全히 良好한 狀態이며, 單純히 疾病이나 虛弱하지 않다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 또한 最高의 健康水準을 享受하는 것은, 人種·宗教, 政治的 信條와 經濟的 狀態의 如何를 不問하고 모든 사람으로서의 基本的인 權利인 것이며, 政府는 그 國民의 健康에 대한 責務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憲法에서도 모든 國民은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限度의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지고 있으며, 國家는 모든 生活部門에 있어 社會福祉·社會保障 나아가 國民保健向上과增進에 努力하지 않으면 아니 될 國家의 責務을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 健康의 價值가 如何히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自己의 健康보다도 他人의 健康을 阻害하는 것은 嚴히 制限되고 있음을 우리는 염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食品에 關係가 있는 營業을 행하-



위생적인 환경과 시설下에서 생산되는 제품

는 자는 消費者에게 安全한 食品을 供給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飲食物에 의한 事故가 發生하지 않게 하는 것이 最低의 要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食品衛生을 行政當局으로부터 大量의 監視指導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킨다고 하는 消極的인 態度가 아니며, 自己의 業所에서 取扱하는 食品에 대하여는 衛生上의 安全을 保證한다고 하는 마음의 姿勢가 必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食品業界에 널리 傳播된다면 食品으로 인한 事故는 없을 것이며, 消費者, 매스콤등 社會가 業界에 대한 信賴

는 높아질 것이고 食品業界의 發展과 繁榮은
말할 나위없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食品衛生의 責任을 完遂하기 위하여
서는 從業員 個個의 個人衛生을 비롯하여 從
業員을 包含하는 關係者 全員이 衛生的 取扱
을 徹底히 하므로써 終局의 으로 安全한 食品
을 提供할 수 있다는 多角的인 活動이 必要한
것이다.

② 食品衛生의 動向

가. 國內의 動向

最近에 이르러 經濟의 發展 · 科學技術의 進
步에 따라 食品工業 및 加工技術의 發達은 國
民生活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生活革命이라고
도 할 수 있는 食生活의 合理化 · 近代化를 가
져 왔고 실로 多種多樣의 食品이 大量으로 供
給되고 消費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反
面, 食品의 製造 · 加工過程에 있어서 食品添
加物의 使用問題 · 急進的으로 새롭히 登場하
는 加工食品의 性狀이나 品質의 判別 困難性의
問題, 食品과 表示內容의 相違하고 있는 접등
不正 · 不良有害食品 問題가 搾頭되는가 하면,
‘카드뮴’이나 水銀같은 微量重金屬, BHC等
毒性農藥, PCB같은 新로운 化學物質 등에 의
한 環境汚染의 影響도 漸次의 으로 深刻한 問
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國民은 食生活의 풍요함을 느낌과 同時に
또한 不安을 느끼는 것도 漸次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食品에 關한 衛生思想의 普及은 食品衛生法
의 一部 改正을 為始로 衛生行政 關係法令의
整備, 研究體制 등의 充實強化, 그리고 消費

者 保護行政의 推進과 발맞추어 해를 거듭할
수록 그 實을 舉揚하게 됨과 同時に 一般國民
도 食品衛生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도 漸次 높
아가고 있는 實情에 있는 것이다.

나. 國際的 動向

世界貿易의 擴大, 食品輸出入의 增加와 더
불어 消費者인 國民의 健康保護에 대하여 國
際的 視野로 부터의 配慮가 불가피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解決하기 위하여 國際食糧
農業機構(F.A.O)와 世界保健機構(W.H.O)가
共同으로 “國際食品規格總會”를 構成하고 本
總會에서는 國際食品規格基準의 作成을 急速
히 遂行시키고 있으며 멀지 않은 將來에 最終
案이 나올 階段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環境汚染의 影響에 있어서도 國內外를
不問하고 극히 深刻한 問題로 되고 있으며 水
銀 · 카드뮴 · 農藥같은 것에 대하여는 國際的
規模로서 檢討가 進行되고 있는 것이다.

③ 食品衛生의 現況과 그 對策

가. 食中毒

食中毒 事件數나 發生 患者數는 거의 비슷
한 比率의 狀態인 것이나 事件當 發生 患者數
는 점차 增加一路에 있는 것이다.

食中毒 事件은 어쨌든 大型化的 傾向을 나타
내고 있으며, 原因施設로 보면 飲食店, 事業
所의 集團給食所, 學校 등에서 增加하고 있다.
그러므로 食中毒 對策으로서는 이와 같은 施
設에 대한 食品衛生思想의 普及과 衛生教育의
徹底한 施行이 至極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나. 食品의 規格基準

食品產業의 飛躍的 發展에 따라 새로운 加工食品이 大量으로 供給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食品의 材料構成이나 그의 安全性에 대하여 消費者의 知識과 經驗에 따라 이를 判斷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實情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食品의 監視指導에 대하여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打決하기 위하여 現在 添加物의 使用基準과 일반 食品에 대하여 設定되고 있는 規格基準을 食品衛生上의 適正한 規制措置로 하고 있으며 隨은 視野에서부터 새로운 食品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食品의 公定規格基準의 設定이 대단히 迅速하게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다. 食品關係營業者에 의한 自主管理制度의 強化

食品衛生의 發展向上을 위하여 营業者自身이 施設의 管理에 대한 努力과 責任을 다하는 것은 至極히 重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企業의 自主的 管理體制의 整備를 推進하고 营業者自身이 事故發生防止에 힘을 傾注하여야 할 自治指導의 觀點이 무엇보다 切實하게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食品關係營業者는 食品衛生法에 따라 強制的으로 여러가지 規制를 받기 이전에 國民의 健康에 直接的으로 關與를 하는 营業者의 한 사람으로서 國民이 지니고 있는 近代的인 高水準의 健康과 食品의 安全性 確保에 관한 意識을 充分히 發揮하여 그 营業을 營爲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그 責任을 認識하고 스스로 이를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食品關係營業者는 食品의 採取·製造·加工·調理·陳列·輸入·運搬·販賣 등의 行爲를 清潔히 그리고 衛生的으로 行하여 安全하고 衛生的인 食品을 供給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自體가 歷然한 原則 또는 自明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無意識中에 종래로 부터의 製造方法을 改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하는 경우가 許多한 것이다.

예를 들면 옛부터 行하고 있는 先祖傳來의 製造法 가운데에는 衛生的인 取扱方의 充分히 包含되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믿게 되는 등, 具體的으로 衛生的인 取扱方法이 무엇인지 吟味하지 아니하고 從來로 부터의 製造方法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든지 혹은 食品關係營業者로서의 自覺을 잊어버린체 그 营業에 從事하는 예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經驗的·慣習的·觀念的으로 오직信念만으로 믿고 具體的으로 그 食品의 安全性을 전혀 確認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無意識中에 食品을 製造한다든지 販賣한다고 할 때에는 國民이 바라고 있는 高水準의 食品에 대한 完全確保의 期待에 副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营業者는 스스로 自己營業에 관한 自體管理 营業要領을 만들어 從事者에게 徹底하게 周知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의 方法으로서는

첫째 : 食品의 衛生的 取扱方法

둘째 : 機械·器具類의 衛生的 管理

셋째 : 製品의 衛生的 品質管理같은 것이 될 것이며 특히 現實的으로, 實證的으로, 具體的인 方法으로 각 工程·각 作業單位마다 實踐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自體管 理營業要領

自體管 理要領	具體的 인 着眼點
1. 施設·設備·施設의 주위환경에 관한 管理要領	○食品衛生法 施行規則에서 정하고 있는 業種別 施設基準 의 각 항목에서 마련
2. 施設·設備·施設의 주위 등의 日常點 檢, 定期點檢에 관한 管理要領	○原料處理設備, 殺菌設備, 充填設備 등의 點檢과 施設· 設備의 補修
3. 製造에 관한 作業管理要領	○原料로부터 製品에 이르기까지의 食品 및 添加物의 具 體的 取扱方法을 정하여 둔다.
4. 販賣에 관한 作業管理要領	○製品이 된 후의 保管으로부터 消費者에게 引渡될 때까 지의 作業에 대하여 정한다.
5. 消費者 씨어비스에 관한 作業管理要領	○製品이 消費者에게 引渡된 후로 부터의 情報收集과 市 場接近 方法과 返品에 대한 對應方法과 같은 作業에 대 하여 정한다.
6. 運搬에 관한 作業管理要領	○原料·半製品·製品같은 것의 積入·混載·溫度管理같 은 作業에 대하여 정한다.
7. 在庫管理에 관한 作業管理要領	○原料·製品같은 것의 搬入·搬出時의 點檢과 倉庫 또는 保管庫內의 管理같은 作業에 대하여 정한다.
8. 使用水의 衛生管理要領	○使用水의 消毒方法, 定期的 水質檢查의 回數 및 期間에 관한 作業에 대하여 정한다.
9. 整理·整頓·清掃에 관한 作業管理要領	○日常作業과 定期作業으로 區分, 貯水槽 및 廢水貯留槽 의 清掃같은 것을 包含한 作業에 대하여 정한다.
10. 製品 등의 自體検查管理要領	○매일 또는 定期的으로 檢查하는 品目 및 項目的 選定과 試料採取方法 및 試驗方法같은 것에 대하여 정한다.
11. 不意의 事故發生時에 있어서의 作業管 理要領	○不意의 事故 또는 食中毒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위의 ① 에서 ⑫에 이르기까지 異常狀態가 發生하였는지의 點檢 과 原因調查方法, 關係機關과의 連絡措置 등에 관하여 정한다.
12. 從業員의 衛生管理·健康管理에 관한 作業管理要領	○從業員의 健康診斷·衛生教育같은 것에 대하여 정한다.

위에서 提示한 각 管理要領은 가능한 한 具
體的이고 간편하고 또한 實行하기 쉬운 것으
로 하여야 할 것이고 分擔도 部門이나 部署마
다 그리고 作業人, 個個人에게 맡기는 方法으
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각 管理要領의 細項目마다 點檢調
查表를 갖고 作業의 終了時에는 點檢하는 것

으로 봤다면 作業의 終了가 確認되는 것이다.

라. 微量有害物質 등에 의한 食品의 汚染 防止

微量重金屬이 食品을 通하여 人體에 摄取되
는 경우의 影響에 대하여서는 現在까지 不明
한 점이 많으며 今後의 研究對象으로 크게 크

로 조업 될 것이다.

食品 중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毒性이나 汚染의 分布狀況에 대하여 調査研究를 進行시켜 調査研究를 終了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殘留許容基準 등을 設定하여 環境汚染物質 등에 의한 食品污染防止에 對應하는 對策을 極力推進할 것이豫想되고 있다.

마. 食品衛生과 消費者保護

食品은 본래衛生이 確保되고 完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供給받게 되는 立場인 消費者는 그 取扱에 있어서 스스로의 不注意나 無知같은 것에 의하여 起起될 수 있는衛生上 危害의 發生을 제외하고는 食品을 供給하는 측에 있어서, 더구나 食品의 製造·加工 등의 過程을 管理하고, 支配하는 立場에 있는 營業者가 食品의 安全性을 確保하려고 하는 義務와 責任이 있다고 하는 것은 再言을 不要하는 것이다.

또한 營業者自身이 商品으로서 製造하고 加工하는 食品의 品質向上,衛生의 確保에 滿足을 기하여야 할 것은 그 商品으로써의 價値를 높힘과 동시에 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促進하게 하는 基本의in 條件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營業者는 스스로의 責任을 이와 같은衛生確保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消費者的利益擁護와 直接的인 관係을 맺게 되는 것이다.

한편 行政은 이와 같은 食品衛生의 向上이 適正하게 促進되게 하여야 할 것이며衛生上의 危害防止 등을 위한 必要하고 有效適切한 施策을 講究함과 同時에 營業者에 대하여서도

行政의 立場에서 監視指導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食品衛生法 關係規定에서는 모든 飲食物은 물론이고 飲食에 관련되는 營業施設 같은 것은 그 規制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飲食에 起因하는 衛生上의 危害 發生을 防止함과 同시에 國民保健向上 및 增進에 寄與”하기 위하여 ○非衛生의in 食品의 製造·販賣禁止, ○食品 등의 成分規格이나 製造基準의 規格基準 設定, ○標示의 義務化, ○營業의 許可, ○食品이나 營業者의 監視指導 등 食品의 衛生과 安全確保같은 것에 대하여必要하고 有效適正한 措置를 講究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食品衛生法은 消費者 保護의 가장 중요한 施策가운데 「危害防止」「規格의 適正化」「標示의 適正化」등 세가지 事項을 包含하고 있는 것으로서 消費者の 利益保護에 큰 役割을 受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食品衛生의 向上에 努力を 아끼지 않는 것은 消費者保護, 나아가서는 國民의 福祉增進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바. 食品衛生行政의 姿勢와 今後의 課題

憲法의 規定에 따라 정하고 있는 生存權, 이를 위하여 國家가 社會的 使命을 다 할 수 있는 것중 하나가 食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食品은 生命의 維持에 불가결한 것으로서 健康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營爲하는 源泉이기도 하다.

한발자국 잘못 다루면 그 影響은 至極히 큰 것이며 나아가서 國民의 健康維持 增進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食品衛生의 向上이 필요불

가결한 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같이 食品問題에 대하여 國民의 關心이 높았던 것은 없었을 것이다.

즉 食品에 관한 衛生思想의 普及은 衛生行政 같은 衛生關係 法令의 整備나 研究體制의 強化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할 수록 그 實을 거두고 있으며, 또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의 制定에 따라 消費者의 利益과 擁護를 위한 行政이 進行되고 있다.

한편으로 經濟成長에 따른 國民所得水準의 向上과 밀맞추어 國民의 食生活의 合理化, 近代化가 이루워지고, 더욱 더 食品業界의 科學技術의 發達은 多種多樣한 加工食品을 大量으로 生產供給하게 된 반면 安全性에 대한 疑問을 가지고 있는 食品添加物이나 環境汚染에 의한 重金屬의 混入, 食品에 殘留하는 農藥, 더욱 더 有害不良食品 등이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食品의 安全, 衛生 및 品質의 確保, 標示의 適正化 등 具體的인 施策의 推進이 國民各層으로부터 要望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經濟의 成長力を 보면 今後의 方向은 國民所得의 水準을 새롭히 向上시킬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國民의 食生活도 多樣化의 傾向으로 갈 것이 明瞭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石油, 電力, 器機에 의한 原料不足과 함께 消費者 物價는 뿌리깊게 上昇할 基調가 계속될 것이豫想된다.

그리고 勞動力의 不足, 資本 自由化와 販賣競爭의 激化 등에 따라 消費經濟는 크게 變化될 것이豫想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食品을 中心으로 한 諸問題와 消費經濟의 方向에 대하여 言及한 바 있으나

社會經濟情勢의 變化에 對處하기 위하여 消費者保護의 施策 중 食品分野와 關聯된 向後의 施策으로서는 ○食品添加物의 再檢討, ○農藥殘留規制의 強化, ○抗生物質 使用規制의 強化, ○Food의 安全性에 관한 試驗·研究의 充實등, ○Food의 安全性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의措置 등으로 例示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施策을 強力히 推進하기 위하여서는 ○Food의 安全確保, ○營業者 責任의 強化, ○檢查制度의 整備, ○標示制度의 改善 등으로 指摘할 수 있겠고 이에 앞서 營業者自身은 이것을 豫見하고 本소 實踐할 수 있는 覺悟로 임해야 할 것이다.

가족계획 메시지

인구폭발, 무서운 일입니다.

인구폭발은 실업의 증가, 식량부족, 자연의 파괴는 물론 주택난과 교통난, 각종 범죄를 유발합니다.

가족계획으로 밝은 사회를 이루합시다.